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어르신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단법인 참누리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만족스러운
노후는 어떤
것일까요?

만족스러운 노후가 되기 위한 공통적 요소는

몸과 마음의 건강,
경제적 안정



가족, 친구, 이웃과의
좋은 관계 유지

“나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상호 존중하는 모습 필요”

인권이란?



자기존중



인 권



타인존중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인권실천은?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나(자신)'와 '남(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이
필요



노인인권이란?

노인인권 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학대
특성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신체적 학대일까요?

- 주먹 등으로 때린다.
- 밀어서 넘어뜨린다.
-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
-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
-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정서적 학대일까요?

- 노인을 비웃는다.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 가족관계에서 노인을 소외시킨다.
- 노인의 일에 타인이 개입하여 결정한다.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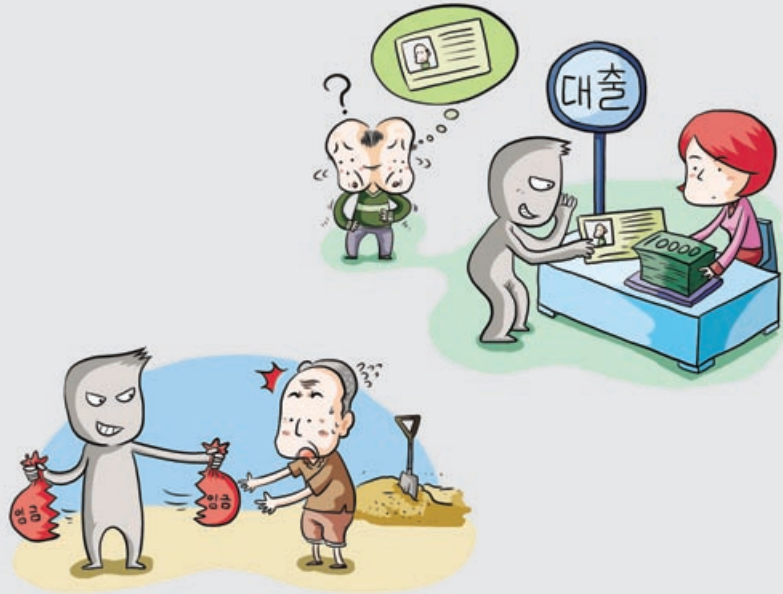


어떤 행위들이 성적 학대일까요?

-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한다.
-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경제적 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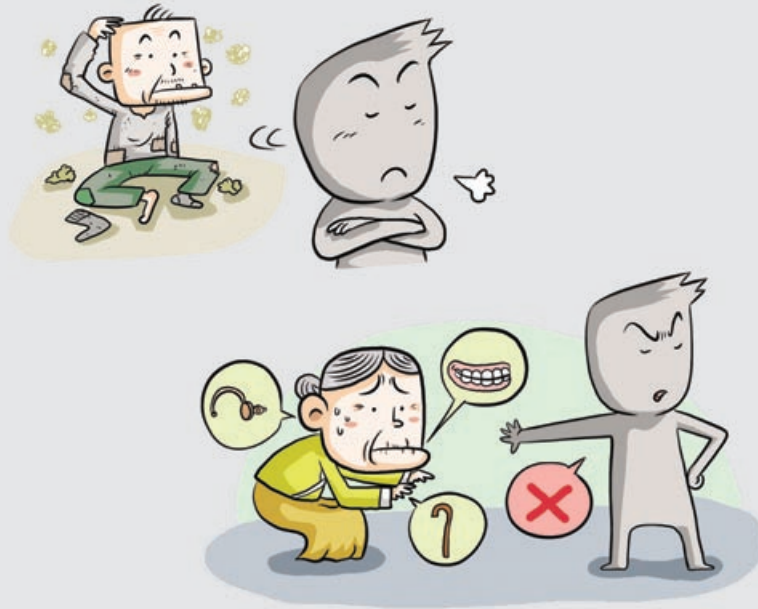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경제적 학대일까요?

- 허락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 허락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공적 부조(예: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한다.
-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 노인의 재산관리와 관련된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방임일까요?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 또는 환경관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한다.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자기방임일까요?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을 위협받는다.
-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을 위협 받는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유기일까요?

-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노인학대
처벌규정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체적 폭행을 가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방해한 자

▶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처벌 기준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노인학대
예방
행동지침

0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02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03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04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05

변화하는 사회(신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06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07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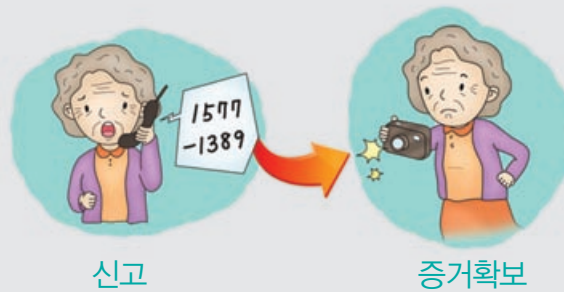
학대피해
노인
대처방안

● 응급 상황



▷ 피신할 때 가져갈 물건 : 현금, 신분증, 인감, 카드, 약

● 비응급 상황



노인학대
신고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노인학대
사례
도움과정



신고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
(24시간 상담)



접수

학대 관련 피해노인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파악



현장방문조사

학대피해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수집



학대사례판정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

상담, 법률, 의료, 일시보호 등



평가 및 종결

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사후관리

종결 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노인학대 재발 방지

서울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소개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
2011년 5월 서울시로부터 지정받아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을
위한 **24시간 Hot Line(상담 전화 1577-1389)**을 설치,
운영하고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관할지역**
(서울 북부지역 11개구 관할구역)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사업내용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 전문상담서비스
- 일시보호
- 의료 · 법률지원
-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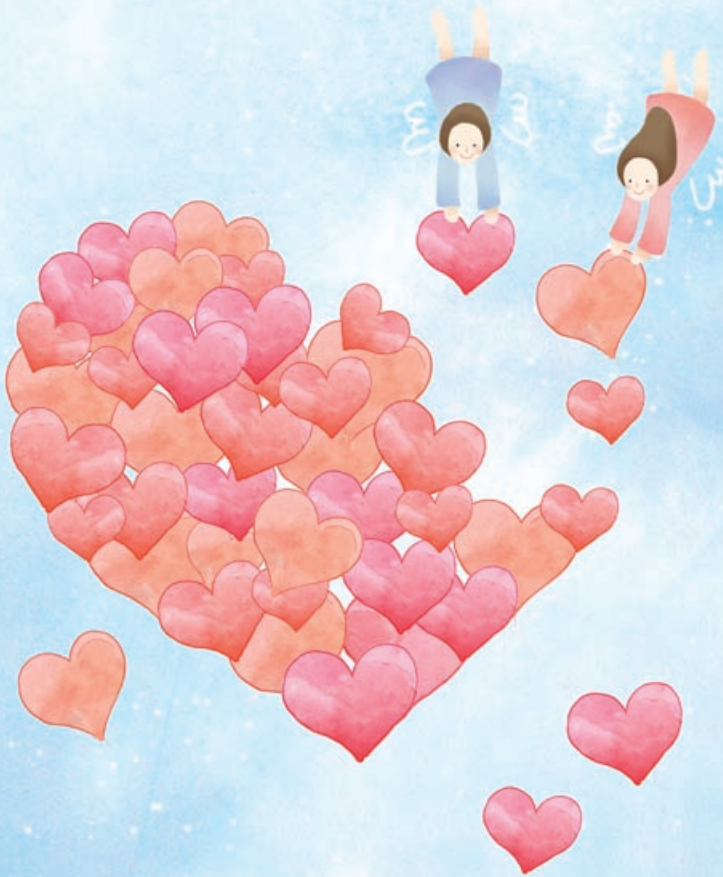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교육

홍보

- 이동상담실시
- 언론홍보, 학술행사
- 캠페인, 사진전

협력체계구축

- 운영위원회,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 자원봉사 사업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직통번호 (02)921-1389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502-494168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소 01077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수유동 39-7)

☞ 수유역 5번, 7번 출구에서 600m

전화 02-921-1389 | 팩스 02-921-1391 | 이메일 sn1389@hanmail.net

홈페이지 www.sn1389.or.kr